

수원지방법원 2020. 11. 11 선고 2019가단560657 판결 [공사대금 및 이익분배금 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명

담당변호사 이재민

변론 종결 2020. 10. 14

판결 선고 2020. 11. 11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O 원고는 2015. 10. 30. 피고와, 광주시 C 답 1,236㎡(이하 '이 사건 모토지'라고 한다)에 18세대의 다세대주택(이하 '이 사건 주택'이라고 한다)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(이하 '이 사건 사업'이라고 한다)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,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원고가 소요되는 모든 경비(건축비 및 제반 공과금)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(이하 '제1차 공동사업약정'이라고 한다).

O D은 2015. 11. 24.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'2015. 9. 30. 매매'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O D은 2015. 12. 30. 주식회사 E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을 대리한 원고와,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,D이 이 사건 모토지를 제공하고,소외 회사가 건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건축공사 및 분양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였다(이하 '제2차 공동사업약정'이라고 한다).

O D은 2016 . 4. 1.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억 2, 550만원(부가가치세 별도), 공사기간 2016. 4. 15.부터 2016. 11. 20.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도급계약'이라고 한다).

O 소외 회사는 2016 . 5. 25.경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16 . 12.경 위공사를 완료한 후 2016. 12. 19.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.

O D은 2016. 12.경 이 사건 모토지를 위 C 답 1,071㎡ 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,F 답 41㎡, G 답 124㎡로 분할하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.

O D은 2017. 1. 31. 이 사건 주택 18세대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,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내지 7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제1,2차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한 후 2018. 6. 14.경까지이 사건 주택 18세대를 모두 분양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고,분양대금도 모두 수령하였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137,911,086원(= [15억 4,000만 원(= 14억 원x1.1)-기지급 공사대금 1,402,188,914원]과 제1,2차 공동사업약정에 따른

분양수익 분배금 92,122,000원 합계 230,033,0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, 원고는 일부 청구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 및 분배금 합계 230,033,086원 중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3. 판단

살피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1,2차 공동사업약정 및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잔여 공사대금 및 분양수익 분배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곽용현